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하우스 대의원 선거시행규칙**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하우스 대의원 선거시행규칙(이하 본 규칙)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자치회칙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선거(이하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선거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2021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선거에 적용하며 조항에 따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하우스 대의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 **제 3 조 (선거시행원칙)**

- ① 본회 모든 회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학생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를 보통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선거의 시기)**

본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4 월 중 학생회 재선거 시기에 맞추어 시행한다.

### **제 5 조 (선거준비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선거공고
2. 입후보 등록 기간

### **제 6 조 (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시까지로 하며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입후보 등록 공고
2. 유세기간
3. 투표기간
4. 당선공고
5. 이의제기 기간
6.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②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국학위 준비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7 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 **제 7 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때 본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 8 조 (규칙 밖의 판단)**

- ①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국학위 준비위에서 결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제 1 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 9 조 (선거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소속한 하우스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 **제 10 조 (피선거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소속된 하우스의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 **제 3 장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하우스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 **제 11 조 (지위)**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하우스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국학위 선관위)는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하우스 대의원의 선거를 본회 회칙과 선거 시행규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국학위 준비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특별기구이다.

### **제 12 조 (구성)**

- ① 국학위 준비위는 국학위 준비위원 중 국학위 선거관리위원장(이하 국학위 선관위원장) 1인과 국학위 선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국학위 선관위는 국학위 준비위의 심의를 거쳐 선거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③ 국학위 준비위는 선관위의 구성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제 13 조 (임기)**

국학위 선관위원회의 임기는 구성 이후부터 해당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 14 조 (선거관리위원장)**

- ① 국학위 선관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국학위 선관위원장이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각호의 절차를 따라 선관위원장 직을 승계한다.

1. 국학위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궐위 시 24 시간 이내에 회의를 자동으로 소집하고, 1 인을 주재자로 선임한다.

2. 국학위 선관위는 선관위원 중 1 인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국학위 준비위에 상정한다.

### 제 15 조 (의무와 역할)

- ① 국학위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국학위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 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학위 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④ 국학위 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착 배부하여야 한다.
- ⑤ 국학위 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⑥ 국학위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의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⑦ 국학위 선관위는 학생회비 중 특별활동지원비 등에서 선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한다.
- ⑧ 국학위 선관위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1. 후보자의 자격박탈
  - 2. 재선거
  - 3. 선거 일정의 조정
  - 4. 당선무효
  - 5. 그 밖의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 제 16 조 (피선거권)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제 17 조 (중립의무)

- ① 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선관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18 조 (국학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국학위 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국학위 선관위 회의에서는 이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 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국학위 선관위 회의는 국학위 선관위원장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④ 국학위 선관위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한 경우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국학위 선관위는 국학위 선관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국학위 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집행부)**

- ① 국학위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집행부를 둘 수 있으며, 집행부는 국학위 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 ② 집행부는 제 15 조 제 3 항과 제 4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집행부는 제 15 조 제 5 항에 해당하는 선관위원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 1.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
  - 2. 기표용구에 접촉하는 행위
  - 3. 투표용지에 선관위 직인을 찍는 행위
  - 4.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행위
- ④ 집행부는 피선거권이 없다.

## **제 20 조 (사무실)**

국학위 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세대학교에 사무실을 둔다.

## **제 21 조 (자격박탈)**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관위원이 제 15 조 또는 제 17 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국학위 준비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본조 제 1 항이 발생하고 국학위 준비위의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학위 준비위원장은 3 일 이내에 준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선관위원이 아닌 준비위원 중 한 사람을 임시 준비위원장으로 호선해야 한다.
- ③ 국학위 준비위는 사안의 경증과 의도성을 파악하여 해당 국학위 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학위 준비위는 국학위 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 22 조 (재구성)**

- ① 국학위 선관위원의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국학위 준비위는 국학위 선관위를 해체하고 24 시간 이내에 재구성하여야 한다.
- ② 국학위 준비위는 국학위 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 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 **제 23 조 (선거공고)**

국학위 선관위는 선거 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선거인명부)**

- ① 국학위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 일 이내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후 중선관위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유권자의 성명, 소속 학번, 소속된 하우스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 25 조 (입후보 등록)

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국학위 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다음 국학위 선관위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국학위 선관위 사무실의 출입이 불가한 경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hwp 또는 docx 형식의 입후보 등록원서 파일과 인쇄물
2. 후보자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각 1 매
3. 후보자 흑백사진 파일
4. 제 38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국학위 선관위가 고지한 양식을 준수한 선거 포스터의 내용

③ 출마형태는 ‘후보자 1 인’의 형태로 한정한다.

④ 국학위 선관위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국학위 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국학위 선관위에서 정한 공고일 06 시까지 등록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등록일 18 시 이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학위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에 “주의”를 조치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3. 등록일 18 시 30 분 이후에는 등록을 금한다.
4. 국학위 선관위가 과실로 미비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 후보자에 당일 21 시까지 통보하고 다음 날 18 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 제 26 조 (등록무효)

① 입후보 등록 후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국학위 선관위는 즉시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5 장 성인지 교육

### 제 27 조 (목적)

국학위 선관위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당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국학위 선관위원회와 하우스 대의원 후보자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한다.

### 제 28 조 (구성)

성인지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 제 29 조 (대상)

성인지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하우스 대의원 선관위원
2. 하우스대의원 후보자

### 제 30 조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국학위 선관위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 6 장 시행규칙 협의모임

### 제 31 조 (지위)

시행규칙 협의모임(이하 시규협)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 제 32 조 (구성)

시행규칙 협의모임은 선관위원과 각 하우스의 후보자로 구성한다.

### 제 33 조 (역할)

- ① 선관위원은 시규협을 통하여 각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후보자 간의 의견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
- ② 본 규칙은 시규협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국학위 선관위는 본 규칙에 따라 유권해석 한다.
- ③ 시규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 내용에 한하여 본 규칙에 준한다.

### 제 34 조 (운영)

- ① 선관위원장은 시규협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에 시규협을 소집한다. 다만, 경기소집일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규협을 소집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일 마감일
  2. 유세 포스터 게재일
  3. 투표의 전날
  4. 개표의 전날
- ② 후보자는 시규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선관위원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학위 선관위는 시규협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참석한 선관위원과 각 후보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 및 공개해야 한다.
- ④ 시규협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는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선관위로의 이관 여부는 국학위 선관위가 결정한다.

## 제 7 장 선거운동

### 제 35 조 (정의)

선거운동은 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제 36 조 (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후보자의 포스터 게시
2. 후보자의 공약 선전

## 제 8 장 유세 및 선전

### 제 37 조 (유세)

유세는 후보자의 포스터 게시 및 정책 공약선전으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 공고일 06 시부터 투표 전날 18 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국학위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 제 38 조 (유세 선전물)

① 유세 선전물은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에 한한다. 선거 포스터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거 포스터는 A2 전지 1 매(420x594mm)의 크기로 한다.
2. 선거 포스터는 후보자의 이름, 약력과 공약을 포함하며, 배치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그림 1>

② 국학위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전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선전물을 제거하거나 해당 후보자에 “주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선전물의 내용을 사진 그림 및 글로 구성
2. 국학위 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

3. 포스터의 경우 흑백으로 인쇄
  4. 국학위 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승인
- ③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부착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제 39 조 (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① 후보자가 포스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후보자는 국학위 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 ② 국학위 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 9 장 투표**

#### **제 40 조 (선거인단)**

각 단위의 선거인단은 다음 각항으로 정의한다.

- ① RC 단위의 선거인단은 각 하우스에 소속한 RA 와 RC로 구성한다.
- ② Non-RC 단위의 선거인단은 본조 제 1 항을 제외한 국제캠퍼스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41 조 (투표방법)**

- 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 ② 전자투표는 중선관위의 지시를 따라 진행한다.
- ③ 국학위 선관위는 투표 방식 및 절차를 투표 시행일 7 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제 42 조 (투표기간)**

국학위 준비위는 선거기간 중 3 일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 43 조 (투표시간)**

국학위 선관위는 투표 시간에 한하여 투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 **제 10 장 개표**

#### **제 44 조 (개표의 담당)**

- ① 개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회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1. 국학위 선관위원장
  2. 각 후보자
  3. 중선관위원 중 1인
- ② 국학위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 ③ 개표장의 사회는 국학위 선관위원장이나 국학위 선관위원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 ④ 사전에 국학위 선관위가 중선관위로부터 개표 관련 실무를 위임받은 경우 제 1 항 3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회하지 않은 채로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본 규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국학위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45 조 (개표시작과 순서)**

- ① 국학위 선관위원장 및 각 후보자의 입회 이후 개표를 시작한다.
- ② 투표 시작은 개표장 사회자의 개표 선포로 시작된다.
- ③ 투표는 위원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종료 선포까지 누른 것이 결과로 처리된다.

#### **제 46 조 (무효투표 및 유효투표 규정)**

무효투표 및 유효투표에 대한 규정은 전자투표의 시스템을 따라 집행한다.

#### **제 47 조 (개표일과 개표장소)**

- ① 개표일은 국학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시규협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개표 장소는 국학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제 48 조 (자격 박탈에 의한 재투표)**

- ① 투표 개시 이후 개표 이전에 한 명 이상의 후보자가 자격 박탈되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해당 후보자의 자격 박탈 후 7 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제 11 장 당선 공고와 이의제기**

#### **제 49 조 (당선공고)**

국학위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 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0 조 (이의제기)**

- ① 국학위 준비위는 개표 이후 당선 후보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본회 회원은 국학위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한다.
- ③ 국학위 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 **제 12 장 선거 부정**

#### **제 51 조 (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1. 누군가 투표 방해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3. 후보자가 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4.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 **제 52 조 (선거 부정의 판단)**

- ① 국학위 선관위와 국학위 준비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국학위 선관위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국학위 준비위에 ‘선거 부정 판단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국학위 선관위는 제 2 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여야 한다.
- ④ 국학위 선관위와 국학위 준비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⑤ 국학위 선관위와 국학위 준비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후보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국학위 선관위와 국학위 준비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후보자를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제 13 장 당선 무효**

#### **제 53 조 (당선무효)**

국학위 준비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① 후보자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 ②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 ③ 당선 후보자가 당선을 포기한 경우

#### **제 54 조 (당선무효의 공고)**

국학위 준비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4 장 재선거**

#### **제 55 조 (재선거)**

- ① 선거 부정이 발견된 때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재선거가 결정된 시 국학위 준비위는 7 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 제 15 장 선거의 종료

### 제 56 조 (당선 확정 공고)

국학위 준비위에서 정한 이의제기 기간에 당선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은 경우 국학위 선관위는 즉시 당선의 확정을 공고해야 한다.

### 제 57 조 (국학위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① 국학위 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업무를 마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종료한다.
  - 1.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2. 당선된 후보자가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 ② 국학위 선관위의 해산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 제 16 장 징계

### 제 58 조 (후보자의 자격박탈)

국학위 선관위는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학위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① 후보자가 3 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 ② 후보자가 국학위 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③ 선거 부정이 확인된 경우

### 제 59 조 (제재조치)

- ① 국학위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한 후보자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1.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 2. 국학위 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② 국학위 선관위는 후보자가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국학위 선관위는 후보자가 3 회 “주의”를 조치받은 경우 1 회 “경고”로 전환한다.

## **제 17 장 재정**

### **제 60 조 (회계기간)**

선거의 회계기간은 국학위 선관위의 구성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 61 조 (회계)**

- ① 국학위 선관위는 국학위 준비위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회계내역을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학위 선관위는 각 항목별로 회계내역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차기 국학위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국학위 선관위는 선거의 회계내역을 선거의 종료일 이후 시행하는 첫 번째 국학위 회의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부칙**

### **제 1 조 (규칙의 효력 발생)**

본 규칙은 2021년 03월 15일 2021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